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세칙

목 차

제1조 목 적6-3-2
제2조 적용범위
제3조 삭제 <2004.8.13>
제3조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운영6-3-3
제4조 접수 및 발급대장 등의 작성6-3-3
제5조 검사요원 확인6-3-3
제6조 검사자료 관리6-3-3
제7조 삭제 <2004.8.13>
제8조 검사중 검사연기 <2012.11.20>
제9조 검사거부6-3-4
제10조 검사무효
제11조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6-3-4
제12조 교정교육
제13조 검사요원 변경관리 및 교육〈2012.11.20〉6-3-4
제14조 삭제 <2004.8.13>
제15조 실적관리6-3-5
제16조 검사기기 관리 등6-3-5
제17조 검사계획 수립6-4-5
제18조 검사업무의 연구개발 등6-3-5
제19조 자가검사자 지원6-3-5
제20조 기타사항
부 칙

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세칙

1985. 9. 5 제정 (규정제110호) 1986. 5. 1 개정 (규정제133호) 1989. 1.18 (규정제178호) 1992.11.30 (규정제281호) 1994. 2.22 (규정제331호) 1996. 1.11 (규정제411호) 1999. 3. 9 (규정제497호) 2000.10.10 전문개정(규정제555호) 2001. 8.17 개정 (규정제573호) 2001.11.30 (규정제585호) 2002. 9.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613호) 2004. 8.13 개정 (규정제674호) 2005. 9.30 개정 (규정제718호) 2006. 5.26 개정 (규정제761호) 2007. 5.17 개정 (규정제797호) 2008.10. 9 개정 (규정제837호) 2012.11.20 개정 (규정제981호) 법률제11690호, 2013.3.23.(정부조직법 개정) 2017.11.02 개정 (규정제1151호) 2017.12.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1160호) 2019.12.24. 개정 (규정제1261호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및 군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08.10.9, 2012.11.20., 2013.3.23., 2017.11.2., 2017.12.4.>

제1조의2(용어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운전적성정밀검사"란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된 운전적성 결함요인을 과학적인 심리기 법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 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신규검사? 특별검사?자격유지검사 및 군운전적성정밀검 사로 구분한다.

- 2. "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시스템"(이하 "검사운영시스템"이라 한다.)이란 운전적성정밀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?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말한다.
- 3. "군운전적성정밀검사"란 군 운전병지원자 또는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말하며 군은 육군?해군?공군?의무경찰 등을 모두 포함한다.
- 4. "일체형(통합형)검사기"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 해당하는 기기형검사의 속도예측검사?정지거리예측검사?주의력검사와 필기형검사의 인지능력검사?지각성향검사? 인성검사 I 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를 말하며,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항목을 통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를 말한다.
- 5. "모의운전형검사기"란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를 시행하는 시뮬레이터형검사기로 기기형검사의 상황인식검사와 필기형검사의 인성검사Ⅱ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를 말한다.

[조 신설 2019.12.24.]

- 제2조(적용범위) ①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3항 및 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검사,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운영은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7.11.2> <개정 2019.12.24>
 - ② 군 운전병 지원자 및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7.11.2.>
 - ③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(이하 "검사"라 한다)는 관계법령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10.9., 2012.11.20., 2017.11.2., 2017.12.4>

제3조 삭제 <2004.8.13.>

제3조(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운영)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.
- ②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2와 같다.
- ③ 검사의 판정은 별표3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[조 신설 2017.11.2.]

제4조(접수 및 발급대장 등의 작성) ①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이하 "관리규정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 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접수 및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08.10.9, 2012.11.20.>

- ② 일일 검사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5조(검사요원 확인<개정 2008.10.9>) ① 검사요원은 검사운영시스템에 검사요원별로 지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9.30, 2012.11.20>
 - ② 삭제 <2019.12.24.>
 - ③ 삭제 <2012.11.20.>
 - ④ 필기형 검사는 검사운영시스템으로 시행하며 신규검사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일체형 (통합형)검사기로 검사하고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모의운전형검사기로 검사한다. <신설 2019.12.24.>
- 제6조(검사자료 관리) ① 검사를 시행하는 소속장(이하 "소속장"이라 한다)은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1.20., 2019.12.24.>
 - ② 삭제 <2019.12.24.>
 - ③ 삭제 <2019.12.24.>
 - ④ 소속장은 검사관련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 발급 및 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9.30, 2008.10.9> <개정 2012.11.20., 2019.12.24.>
 - 1.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종합판정표는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 - 2.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3.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수 및 발급대장은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4.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일지는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5. 제8조에 따른 검사연기신청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6. 제11조에 따른 종합판정표 재발급현황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현황은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7. 제15조에 따른 검사실적은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.
 - 8.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기 이력대장은 검사운영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이를 물자관리지침에 따라 불용결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 삭제 <2004.8.13>

제8조(검사 중 검사연기) 소속장은 검사중 수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별지 제2의2호서식의 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사일로

부터 7일이내에 잔여검사를 수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1.30., 2012.11.20., 2019.12.24.>
② 삭제<2012.11.20>

- **제9조(검사거부)**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4.8.13, 2008.10.9>
 - 1. 주취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 - 2. 관리규정 제7조제1항의 재검사기간에 해당하는 자
 - 3. 대리수검자 및 대리수검 의뢰자
 - 4. 기타 검사시행에 방해가 되는 자
- 제10조(검사무효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결과는 무효로 하며, 수 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10.9>
 - 1. 제9조 해당자 및 검사중 무단이탈자
 - 2. 검사중 연기신청한 자로서 지정된 일자가 경과된 자 <개정 2012.11.20>
 - 3. 수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없게 된 경우 <개정 2005.9.30>
- 제11조(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) 관리규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판정표 또는 수검사실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및 수검사실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08.10.9, 2012.11.20>
- 제12조(교정교육) ① 교정교육 대상은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 대상자로 한다. <개정 2008.10.9., 2012.11.20., 2019.12.24.>
 - ② 교정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하되, 필요시에는 집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③ 교정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접수 및 발급대장의 교정교육 란에 "◎"를 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12.11.20>
- 제13조(검사요원 변경관리 및 교육<개정 2012.11.20>) ① 소속장은 검사요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명, 일자, 사유 등의 변경된 사항을 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11.20.> <개정 2019.12.24.>
 - ② 검사업무에 최초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 2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을 포함한 검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, 교육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7.5.17, 2012.11.20>
 - ③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검사요원은 매 3년마다, 검사관 이상의 보직에 임명된 검사 요원이 3년 이상 타 업무에 종사하다가 검사업무에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5.17> <개정 2012.11.20>
 - ④ 공단 이사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은 교육일정, 교육과목, 평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7, 2008.10.9>
 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에는 공단직원 외의 자를 포함할 수 있다. <신설 2007.

5.17, 2008.10.9> <개정 2012.11.20>

제14조 삭제 <2004.8.13>

- 제15조(실적관리) 소속장은 검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실적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08.10.9., 2012.11.20., 2019.12.24.>
- 제16조(검사기기 관리 등) ① 소속장은 검사기기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기기 이력대장에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8.13, 2007.5.17, 2012.11.20, 2019.12.24.>
 - 1. 관리전환
 - 2. 주요 기능의 변경
 - 3. 고장 및 수리
 - ② 검사기기 관리책임자는 매일 검사시행전에 별표4의 검사기기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7., 2017.11.2>
 - ③ 소속장은 검사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검사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검사기기 유지보수 관리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복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7., 2012.11.20., 2019.12.24.>
 - ④ 이사장은 매년 제3항의 검사기기 유지보수 관리요령이 포함된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일까지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5.17> <개정 2012.11.20., 2019.12.24.>
 - ⑤ 기타 검사기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물자관리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07.5.17>
- 제17조(검사계획 수립) 이사장은 매년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1.11.30, 2008.10.9> <개정 2012.11.20., 2013.3.23., 2019.12.24.>
- **제18조(검사업무의 연구개발 등)** 이사장은 검사업무 발전을 위하여 검사기기·검사내용 및 교정교육 방법 등을 연구·개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1.11.30, 2008.10.9> <개정 2012.11.20>
- 제19조(자가검사자 지원<개정 2008.10.9>) 자가검사자 등으로부터 검사기기 개발, 검사프로그램 제공 및 검사요원 양성교육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01.11.30, 2008.10.9>
- **제20조(기타사항**<개정 2008.10.9>)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세칙 이외에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9., 2019.12.24.>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요령은 199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요령은 199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요령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요령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01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제규정관리규정 개정 2002.9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. 9. 16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요령)(생략)

- 제3조(명칭변경)①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 시행중인 제규정의 명칭중 규칙은 규정으로, 요 령은 세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.
 - ②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제규정의 명칭을 변경한다.
 - 1. "강사료등제수당지급규칙"을 "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"으로
 - 2. "보안업무규칙"을 "보안업무운영세칙"으로 한다.

부 칙 <2004.8.13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5.9.30>

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5.26>

이 세칙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7.5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8.10.9>

이 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11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"운전정밀검사"명칭은 "운전적성정밀검사"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7.11.2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7.12.4., 제규정관리규정 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 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칙 <2019.12.24.>

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17.11.2.> <개정 2019.12.24.>

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 및 방법

1. 기기형 검사

- 가. 속도예측검사 : 자동차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다양한 도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며, 터널 진입 후 목표지점(터널 끝의 빨간색 표 아래)에 도착하였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버튼을 누름. 자동차의 출현방향 은 2조건, 이동속도는 3조건이며, 총 18회 시행
- 나. 정지거리예측검사 : 화면 상단에서 노랑색의 이동선이 다양한 가속도로 하단으로 내려오며, 적색의 정지선과 겹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. 이동속도는 초기속도 3조건, 가속도 3조건이며, 총 18회 시행

다. 주의력검사

- 1) 주의전환: 화면에 사전단서(#)가 먼저 제시되고, 이어 1개의 목표자극(→)과 7개의 유사자극(→)이 동심원 형태로 제시됨. 목표자극(→)의 방향을 파악하여 해당 버튼을 누름(사전단서 위치에 화살표가 나타날 확률은 75%). 목표자극(→)방향은 2조건, 동심원 지름 2조건, 제시위치는 8조건이며, 총 32회 시행
- 2) 반응조절 : 화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적색원 또는 녹색원이 나타나며, 화면에 제시된 색깔과 같은 반응버튼을 최대한 빨리 누름. 총 80회 시행
- 3) 변화탐지: 화면에 3~5개의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구성된 도형이 먼저 제시됨. 이후 같은 수의 도형이 제시되며, 처음 제시된 도형세트와 위치 또는 색상, 모양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버튼을 누름. 도형개수는 3 조건, 변화 여부 2조건, 변화조건은 3종류이며, 총 36회 시행

2. 필기형검사

- 가. 인지능력검사 : 제시된 2개의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주어진 도형과 관계되는 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. 14문항, 제한시간 7분
- 나. 지각성향검사 : 제시된 단순도형을 포함하는 복잡도형을 찾아 표기하고, 제시된 복잡도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. 18 문항, 제한시간 10분
- 다. 인성검사 :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하여, 문항의 내용이 자신에게 대부분 해당되면 '매우 그렇다', 일부 해당되면 '약간 그렇다'에 해당되지 않으면 '아니다'에 표기. 정답 및 제한시간은 없으며, 인성검사는 147문항.

[별표 2] <신설 2017.11.2.> <개정 2019.12.24.>

군 운전적성정밀 검사의 측정내용

1. 기기형검사

가. 속도예측검사

- 1)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
- 2) 반응 불균형 정도

나. 정지거리예측검사

- 1)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
- 2) 공간거리 추정의 정확도와 급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위치 산출능력
- 3) 반응 불균형 정도

다. 주의력검사

- 1) 주의전환 : 운전 중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
- 2) 반응조절 : 운전에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
- 3) 변화탐지 : 복잡한 상황에서의 변화사항을 기억하여 탐지할 수 있는 능력

2. 필기형검사

가. 인지능력검사

- 1) 인지적 유창성
- 2)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

나. 지각성향검사

1) 시지각 성향(장의존성/장독립성)

다. 인성검사

- 1) 타당도 : 긍정왜곡, 반응 일관성
- 2) 현실 판단력: 사고, 지각 문제 및 자존감
- 3) 행동 안정성: 위법성/공격성, 충동성
- 4) 정서 안정성 : 불안 / 신체화, 우울
- 5) 정신적 민첩성 : 기억력 및 주의력 부족
- 6) 생활 안정성 : 군 생활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능력

[별표 3] <신설 2017.11.2.> <개정 2019.12.24.>

군 운전적성정밀 검사의 판정기준

1. 지각운동요인

	Į.	키등급	_		0	,	5		
검사학	항목		1	2	3	4	반응치	오반응	
4	 속도	চা মা	47 COplaj	47.58이상	74.23이상	100.89이상	127.55	O품[시1]	
d	- 픽셀 예측		47.58미만	74.23미만	100.89미만	127.55미만	이상	3회이상	
7	검사 배점		24	22	18	14	8	0	
-1-	-1-1-1	হ্মী গ্রী	60.05	60.05이상	88.69이상	117.32이상	145054)	O おしま)	
	지거리 * 기기	픽셀	미만	88.69미만	117.32미만	145.95미만	145.95이상	3회이상	
예측검사		배점	14	13	11	9	6	0	
	2 4)		1475.304	1475.304이상	1739.997이상	2004.69이상	2269.383	[국] 시 기	
	주의	ms	미만	1739.997미만	2004.69미만	2269.383미만	이상	5회이상	
주	전환 주 배점		34	30	22	14	2	0	
의	n) Q		897.20	897.20이상	996.67이상	1096.14이상	1107 (Malk).	11 취시 시	
력	반응	ms	미만	996.67미만	1096.14미만	1195.62미만	1195.62이상	11회이상	
검	조절	배점	14	13	11	9	6	0	
사	내귀	정반응	molal	30이상	27이상	24이상	941111		
	변화	수	33이상	33미만	30미만	27미만	24미만		
	탐지	배점	14	13	11	9	6	_	

2. 지적능력요인

검사항목	평가등급	1	2	3	4	5
인지능력 검 사	정답수	14이상	13이상 14미만	11이상 13미만	9이상 11미만	9미만
日介	배 점	30	24	22	20	18
지각성향	정답수	16이상	14이상 16미만	11이상 14미만	8이상 11미만	8미만
검 사	배 점	70	49	42	35	28

3. 적응능력요인

가. 타당성 척도

검사항목	평가등급	1	2	3	4	5
그저에고	긍정왜곡 응답수		8이상	11이상	13이상	15이상
0 0 11 7	о н I	8미만	11미만	13미만	15미만	13918
반응일관	중복수	0~1	2	3	4	5~8

- 주) 1. 긍정왜곡' 또는 '반응일관' 척도 5등급 해당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 결과가 나올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
 - 2. 적응능력요인 검사문항 중 7문항 이상 무응답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

나. 인성검사

검사항목	평가등급	1	2	3	4	5
현실	응답수	2이하	2초과 6이하	6초과 10이하	10초과 14이하	14초과
판단력	배 점	20	17	14	10	5
행동	응답수	4이하	4초과 9이하	9초과 14이하	14초과 19이하	19초과
안정성	배 점	20	17	14	10	5
정서	응답수	()이하	0초과 4이하	4초과 9이하	9초과 13이하	13초과
안정성	배 점	20	17	14	10	5
정신적	응답수	3이하	3초과 9이하	9초과 15이하	15초과 21이하	21초과
민첩성	배 점	20	17	14	10	5
생활	응답수	6이하	6초과 15이하	15초과 23이하	23초과 31이하	31초과
안정성	배 점	20	17	14	10	5

[별표 4] (제16조제2항 관련) <개정 2004.8.13., 2008.10.9., 2017.11.2., 2019.12.24.>

검사기기 점검요령

구	<u>변</u>	점검사항 및 점검요령
	시 스 템	·모니터 화면 출력 상태 ·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통합형검사기 (신규검사 및	검사판넬	· 검사 관련 스위치 작동 상태 · 지문인식기 정상작동 여부
자격유지검사 용)	헤 드 폰	• 잭 연결상태 및 볼륨
	검 사 기 제어장치	·모니터 화면 출력 상태 ·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	시 스 템	·모니터 화면 출력 상태 ·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모의운전형검사기	검사판넬	·검사 관련 스위치 작동 상태 ·핸들센서 정상작동 여부
(특별검사용)	헤 드 폰	·잭 연결상태 및 볼륨
	검 사 기 제어장치	·모니터 화면 출력 상태 ·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	시 스 템	·모니터 화면 출력 상태 ·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동체/야간	내부 조도계	· 내부 램프 점등상태
시력검사기 (특별검사용)	반응 스위치	・반응 스위치 작동 상태
(E L 0 /	방향표시기	· 시표와 방향표시기 방향의 일치 여부
	형 광 등	• 형광등 점등상태(야간시력)
	주전산기	·부팅 상태 ·본사 전산기와 연결상태
	프 린 터	· 프린터 인쇄 상태
전산장비	접수용단말기	・통신상태(초기화면 정상여부)
	UPS	•에러표시 여부(전면 판넬)
	AVR	·정상 전압 출력 여부

[※]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(검사일지)에 표기

[별지 제1호서식] (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) <개정 2004.8.13, 2008.10.9., 2012.11.20., 2017.11.2>

운전적성정밀검사 접수 및 발급대장

년 월 일

번호	구분	업종	성 명	생년월일	발급 번호	발급 일자	검사 결과	교정 교육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(제4조제2항관련) <개정 2004.8.13, 2006.5.26, 2008.10.9., 2012.11.20., 2017.11.2., 2019.12.24.>> (앞면)

	검	사 일	ᇫ							담	당	결	재
		년	월	<u>]</u>	일								
1. 수 검	인 원										(당일	/연간	구계)
구	분	계		신:	7	군	신규	특	増	자격	유지	7]	타
접	수	/		/	,		/		/	/	/	,	/
검	사	/		/	′		/		/	/	/	,	/
2. 종 합	- 판 정										(당일	실/연간	·누계)
구	분	계		2	험 합	-	부	적합	Ĵ	부적합률	률(%)	刊	고
신규건	남사	/			/			/		/			
군 신규	'검사	/			/			/		/			
자격유지	시검사	/			/			/		/			
3. 교 정	교 육												
구	분	,	계		-	부적	합자		특	별검사:	자	비	고
당일/연기	간누계		/			/	/			/			
4. 수수회	료(수입)											
구	분	공급	가액		부	가	세		계		ı	비고	
계													
신규? 군 신규													
<u>면 건비</u> 특별기													
자격유지													
재 발													
증 명	서												
5. 검사	기기 관	리											
구 분	통합형	검사기	특기	별검시	<u> </u>]	동체	·02N		7]	전산장	日]	확인	l자
점 검													
결 과													
고 장													
조 치													

(뒷면)

6. 수검ス) 인적시	·항	정정										
		수	검)	\	항					정 정	성 사 항	
검사일자	번호		구분	지역	성	명 주민등록번호			록번호	_	을	-으로	
7. 판정표	7. 판정표 재발급 취소												
취소번호 성명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구분 담당자 취소사유													
(2-2 -			02)										
(재발급	: 0건, 취	취소	: ()건)										
8. 인성검		감사											
수검번호	성 대	경	ス	방년월일]	수경	범번호	갓 (성 명		생년	친월일	
9. 특 기	9. 특 기 사 항												
2] 77 7] 2]	.n. [=	1 17 -	-1 1 -1 (5 & 11 4	.1.11	1 -11 -7	-1 1	1107	4)0 1)0	-1 11	10.7-	_1 17 12 1 - 1	

※ 신규검사에는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나 목의 자격유지검사를 포함하고, 자격유지검사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」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자격유지검사를 포함한다.

 $210\text{mm}{\times}297\text{mm}$

(일반용지60g/m²)

[별지 제2의2호서식] (제8조제1항관련) <신설 2012.10, 2017.11.2., 2017.12.4>

검사구분	OTITIAL	운전적성정밀검사 연기신청서						
	운선석성·	즉 시						
성 명	생년월일	<u> </u>	전화번호	검사일자				
연기사유								
검사항목	완료검사 항목							
¤~lõ¬	잔여검사 항목							
잔여검사 수검 신청일(7일 이내)								

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세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의 사유로 일부 검사를 연기 하여 받고자 신청합니다.

201

신 청 인

(서 명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* "잔여검사 수검 신청일"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경과된 경우 검사결과는 무효 처리되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 (제11조 관련) <개정 2008.10.9., 2012.11.20., 2017.11.2>

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대장

번호	발급일자	성 명	생년월일	검사일자	피위임자	발급구분

[별지 제4호서식] (제15조 관련) <개정 2004.8.13, 2008.10.9., 2012.11.20., 2017.11.2., 2019.12.24.>

()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적

1. 총 괄

			()월	기 간 중				
구 분	연 간	계	신규	군 신규	특별	자격유지	(월~월)	비고
계획								
실 적								
실적율(%)								

2. 업종별 실적

2. 日 0 已 已 7													
_	구 분		계		신 규			특 별			자격유지		
	- 正	계획	실적	%	계획	실적	%	계획	실적	%	계획	실적	%
	계												
	시 내												
	시 외												
버	전 세												
	고 속 마 을 장 의												
스	마 을												
	장 의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
택	회 사												
	개 인												
시	소 계												
	일 반												
화	개 별												
물	용 달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
비	군인												
시업용	기타												

3. 검사별 판정결과

구 분	계	적 합	부적합	부적합률(%)	비고
신규검사					
자격유지					

4. 시·도별 실적

7 H	7	검사극	구분별	1			버	<u></u> 스			택	시	ই	}	물	الحار
구 분	신규	특별	자격	계	시내	시외	전세	고속	마을	장의	회사	개인	일반		용달	기타
계																
서 울																
부 산																
대 구																
인 천																
광 주																
대 전																
울 산 경 기																
경 기																
강 원																
강 충 북 충 남																
충 남																
전 북 전 남																
전 남																
경 북																
경 남																
제 주																
세 종																

5. 교정교육 실적

구 분	계	부적합자	특별검사자
인 원			

6. 재발급 실적 : 판정표 건, 증명서 건

7. 비사업용 실적(당월/누계): 명/ 명

8. 기타

\•/	기 그 기 기 제 나	O 오기에비	기레그리	레10구 하이레이컨 레이는	-1 II	111	, 1

※ 신규검사에는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자격유지검사를 포함하고, 자격유지검사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자격유지검사를 포함한다.

[별지 제5호서식] (제16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2.11.20., 2017.11.2>

운전적성정밀검사기기 이력대장

소속 :							작성일/	자		
기 기 명			쳥	식			구입	가격		
고유번호			제작	회사			형식	번호		
제작일자			설치	일자			제작	·번호		
			변	경	사	항				
지사명 박		변경일자				사 유	및 근	거		

[별지 제6호서식] (제16조제3항 관련) <개정 2008.10.9>

()분기 검사기기 고장 및 수리 결과 보고

□ 검사기기 고장 및 수리 내역

ار خیرا	일	자		점검	점검자		
순번	장애일자	수리일자	점검 및 조치내용	정기	수시	(업체명)	

※ 점검구분 : 해당 점검란에 "○"표시